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동축전지 대여 제도 도입〉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03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03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의견	4
2. 대여 구동축전지 및 자동차사용자 정의	7
3. 구동축전지 소유권 분리 등록 등	10
4.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18
5.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교환·환불 등	27
6.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취소 등	33
7. 과징금, 벌칙, 과태료 및 부칙	45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0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10.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소비자는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도입이 어렵고, 관련 사업체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

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구동축전지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정의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의8 및 제3호).
- 나.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하여 그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통해 소유권 변동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등록원부에도 해당 소유자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제6항).
- 다.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그 사유, 신청일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 라.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마.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변경·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를 탈거하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함(제35조의13)

제2항제5호).

바.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 이행시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6제5항)

사.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아.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근거도 마련함(안 제68조의26).

자.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이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후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7).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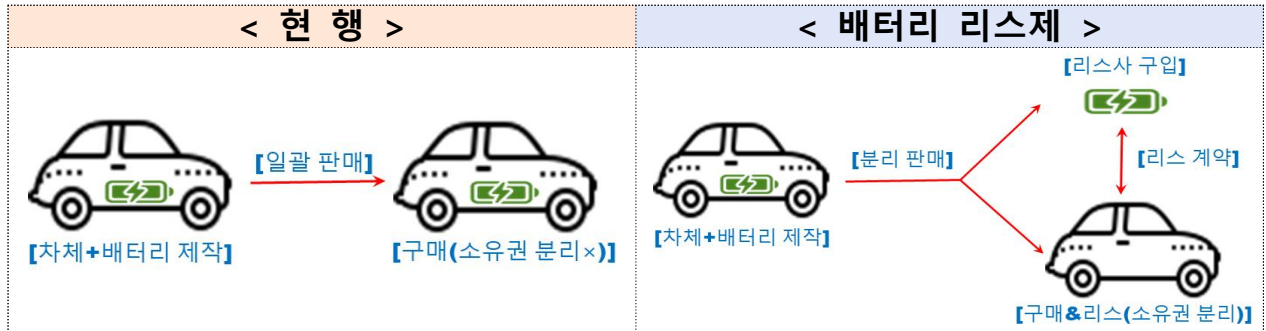
가. 입법 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전체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고, 2035년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임.

이에 정부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2026.2.27.)에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대여받는 BAAS(Battery as a Service) 방식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과 배터리 리스제 비교 >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업계도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2026년 5월 일반소비자 대상(B2C) 배터리 리스 실증특례가 승인¹⁾되어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사업이 추진 중임.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배터리 리스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 마련, 배터리 결함 리콜 시 리스이용자 및 리스사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 통지, 교환·환불 중재 신청 절차 마련등을 통해 배터리 리스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실증’을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한 바 있음.

나.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 규정 정비, 소유권 분리등록, 운행정지·리콜, 교환·환불, 사업계획 승인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초기 구매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배터리 구독형 사업모델에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

특히 소유권 분리로 새롭게 형성되는 배터리 이용자와 대여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의 규정에서 명확히 하면서 등록·안전관리·소비자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다만, 이 사업모델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하여 2026년 5월부터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으로, 소비자 만족도, 안전관리 실태 등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대여 구동축전지 및 자동차사용자 정의

개정안은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해 정의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한 자동차(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라 함)를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8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7. (생략) <u><신설></u> <u>1의8. · 1의9.</u> (생략) 2. (생략)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u>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u>를 말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1의7. (현행과 같음) <u>1의8. “대여 구동축전지”란 제68조의2제1항의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68조의2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u> <u>1의9. · 1의10.</u> (현행 제1호의8 및 제1호의9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u>소유자[제5조제2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라 한다)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4. ~ 14. (생략)	<u>또는</u> ---. 4. ~ 14.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6 및 제3호는 구동축전지, 자동차사용자에 대해 정의²⁾하고 있음. 그러나 구동축전지에 대한 정의는 대여 목적물인 구동축전지와 그 밖의 구동축전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³⁾이 도입되어 하나의 자동차에 구동축전지 소유자와 그 외 자동차 부분인 차체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경우, 등록·리콜·교환환불 등의 책임주체와 적용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또한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이하 “대여 이용자”라 함)처럼 차체는 소유하되 구동축전지는 타인 소유인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 검사, 교환·환불 신청 등 법적 의무와 권한의 귀속 주체가 불명확할 수 있음. 특히 현행법상 자동차는 자동차사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장착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제작등을 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용자만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대여 이용자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운행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대여 이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여 구동축전지’ 정의를 신설하고, 대여 이용자를 자동차 사용자(소유자) 범위에 포함하는 정의 규정 정비는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1호의8의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정의는 구동축전지 대여자(이하 “대여자”라 함)가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동축전지라는 속성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제68조의26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사업자의 진입 등 요건에 해당하므로 정의규정에서 “제68조의26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대여 구동축전지) 사업관리 등 제도 운영을 위해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종 개정 법률

(제21412호)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소유자 범위 확대)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은 자동차 이용자도 자동차 소유자 범위에 포함하여 자동차 검사, 교환·환불 등 기존 의무 이행·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3. 구동축전지 소유권 분리 등록 등

개정안은 대여 구동축전지⁴⁾에 대하여 그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통해 소유권 변동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등록원부에도 해당 소유자를 표기하도록 함.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대여 이용자와 대여자는 그 사유, 신청일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3항 신설, 제6조 및 제7조제6항,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생략) <u><신설></u>	제5조(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하는 자동차(이하 “구동축</u>

4)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동축전지를 말함.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u><후단 신설></u>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략)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u>전지 대여 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한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점검, 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 -----<u>.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 소유권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현행	개정안
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u>소유자</u>,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u>소유자, 구동축전지 대여자(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로 한정한다)</u>----- ----- ----- ----- ----- ----- ----- ----- ----- ----- ----- ----- 제13조의2(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등) ① 제68조의 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를 말한다)는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에 관하여 <u>소유자 변경, 대여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u>

현행	개정안
	<u>다. 이 경우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변경등록 신청일, 신청 사유, 변경등록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u> <u>②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록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신청 사유, 신청 시기 등을 알리고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대여 계약의 승계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치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을 의뢰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u>

현행	개정안
	<u>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대여받은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및 대여 계약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려야한다.</u> <u>④ 그 밖에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u>

가. 검토의견

현행 제5조⁵⁾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음.

대여자⁶⁾가 대여 구동축전지 소유권을 그 외 자동차 소유권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여 구동축전지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을 명확히 할 수 있음.

5)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6) 대여 구동축전지를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대여하려는 자를 말함.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여자를 기재함으로써 중고차 거래 시 매수인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변경·이전·말소등록 시 대여자와 이용자 간 통지·협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폐차, 중고거래 등의 과정에서 대여 구동축전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동축전지 대여자(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를 말한다)” 괄호 안 규정은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변경등록 의무자를 대여자에서 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보와 협상력에 우위에 있는 대여자가 “협의”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변경등록 신청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변경등록 사유는 대부분 대여자 측의 사정에서 비롯되므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의2제4항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납부 근거를 정하는 제

76조⁷⁾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는 제84조⁸⁾에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경등록 절차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제76조 및 제84조에 수수료 및

7)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10.24.>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삭제 2021.4.13.>
6. <삭제 2021.4.13.>
-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8.8.14.>
-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 등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의2제3항에서 대여 이용자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것⁹⁾이므로,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매도의 알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소유권 분리 등록) 소유자가 다른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외 부분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구동축전지 관리를 위해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 외에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한 차량의 운행 금지에 동의함.

(소유권 변동 효력) 소유권 분리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을 하여야 득실변경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등록원부) 대여 구동축전지는 구동축전지 대여자(리스사)가 소유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기재할 필요 있음.

(변경·말소등록)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 폐차 등의 사유로 변경·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여자와 이용자가 신청 사

9) 매매는 물건이나 자산을 사고파는 전체 과정(거래 행위)을 뜻하고, 매도는 그중에서 물건이나 자산을 파는 행위만을 뜻함.

유·시기·필요 조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 변경·말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이전등록)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로 거래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계약 현황, 계약 승계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릴 필요성에 동의함.

2)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개정안은 구동축전지 소유권을 일부 대여 사업자에 귀속시키고, 폐차·말소·이전·재활용 전 과정에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함.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장기적 비용 부담과 차량 처분 제한, 사고 등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음.

대여 사업자 도산·사업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용후 배터리 회수 시장의 과점화 및 기존 자원순환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

4.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개정안은 대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여자에게도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변경·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를 탈거하

는 경우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의 대여 구동축 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여 이용자가 받게 하며, 대여 구동축전지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31조제1항, 제35조의13제2항제5호 및 제35조의16제1항제2호 신설, 제35조의18).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요청</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 구동축전지를 소유한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기 대여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⑩ (생략)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 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②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의 변 경·해지 등으로 해당 구동축 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구동축 전지 대여자</u>
③ ~ ⑤ (생략)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 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 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 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 -----

현행	개정안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u>결과</u>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전기자동차의 대여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u>결과, 대여 구동축전지</u> ----- ----- ----- ----- -----.

가. 검토의견

1)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운행정지

현행 제24조의2¹⁰⁾는 운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여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대여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구동축전지 소유자인 대여자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24조의2제2항¹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요청(제1호)과

10)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채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자동차관리법」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제2호)을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2호는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어 요청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신설되는 제3호(대여자의 요청)는 기존 제2호와 달리 요청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대여자가 자의적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제2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여자의 운행정지 요청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여 구동축전지 제작 결함의 시정

현행 제31조제1항¹²⁾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경우 대여자와 대여 이용자(자동차 소유자에 포함)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결함 발생 시 대여자에게도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하여 리콜 실시, 계약 변경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의 변경·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전기자동차등의 유통전 안전검사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로서 전기자동차의 대여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대여 이용자가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이용자에게 운행전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5)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여 구동축전지 관리

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포함시킴으로써 구동축전지의 생산부터 사용, 반납,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운행정지) 대여 이용자가 아닌 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보완하여, 대여자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작 결함의 시정)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 발생시 소유자인 구동축전지 대여자와 이용자 양측에 시정조치를 알려 리콜 실시, 계약 변경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성능평가) 대여 계약 변경, 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대여자가 이를 회수하므로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검사) 재제조 배터리를 대여받아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이용자에게 운행 전에 안전 검사를 받도

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이력관리시스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이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5.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교환·환불 등

개정안에 따르면, 대여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 이행시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대여 이용자는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 교환·환불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4제6항 및 제47조의6제5항 신설,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 -----

현행	개정안
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u>제외한다</u>)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 ----- ----- ----- ----- ----- ----- <u>제외하고,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교환·환불 중재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u>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현행	개정안
또는 환불 방법) ① ~ ④ (생략) <u><신설></u>	또는 환불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교환·환불 중재에 따라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환불이 판정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은 환불의 이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u>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 ----- ----- ----- ----- ----- ----- ----- ----.
② ~ ⑩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3조의2제3항의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u> ② ~ ⑩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1) 대여자의 교환·환불 요구

현행 제47조의2¹³⁾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환·환불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경우 대여자와 대여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어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어느 쪽이 교환·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13)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등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 불명확함.

개정안은 대여 이용자(자동차 소유자에 포함) 뿐만 아니라 대여자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대여자는 구동축전지 공급·대여 계약의 당사자일 뿐 자동차 차체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고,

대여 이용자와 대여자가 모두 교환·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교환을, 대여자는 환불을 각각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내용의 요구가 경합하거나 중복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여자를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여 이용자의 중재 신청 시 대여자 동의

안 제47조의4제6항에서 대여 이용자가 운행 중인 대여자동차에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대여 이용자가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환불 판정이 있는 경우 대여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대여자가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우려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자동차매매업자 고지의무

안 제58조제1항제5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가 중고 거래될 경우 매수인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임을 모르고 구동축전지 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구동축전지 계약 현황 등을 포함하는 것은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환·환불 요건) 교환·환불 요구자에 구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구입한 구동축전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중재 신청)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가 운행 중인 구동축전지 대여자동차에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여자는 중재 과정에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 발생시 양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함.

(교환·환불 방법) 중재 결과 환불이 결정된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 동차 환불과 동시에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하여, 원활한 구동축전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의무) 개정안은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중고거래하려는 경우 대여 계약과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중고로 매수하려는 자에게 계약 현황,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게 하여,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 있음.

6.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취소 등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대여자의 사업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6 및 제68조의27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7장의5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등</u> <u>제68조의26(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구동축전지를 장착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제작등을 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사업 대상 차종 및 판매 예정 대여 구동축전지의 특성, 제원 정보 등에 관한 사항</u> <u>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및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제32조의2제1항의 사후관리 및 교환·환불 계획 등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과 보호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3. <u>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u> 4. <u>구동축전지 대여자, 부품제작자등과 연계한 대여 구동축전지 운영·처분 및 관리 방식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제2조 제1의8의 사용후 배터리 및 같은 조 제1의9의 재제조 배터리를 활용한 운영·처분 방식을 포함한다)</u> 5. <u>그 밖에 안전관리,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고 구동축전지의 체계적인 활용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u> ③ <u>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u>

현행	개정안
	한다)을 받은 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들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명한 경우(이하 “사업계획 시정명령”이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이하 “사업계획 승인 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현행	개정안
	<u>제4호의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u> <u>2. 사업계획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3.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4.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의 중단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u> <u>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u>⑥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⑦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구</u>

현행	개정안
<신 설>	<u>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u>1. 대여 구동축전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u> <u>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매매·폐차가 필요한 경우 그 대여 구동축전지의 처리 방법</u> <u>3. 대여 구동축전지 교환·환불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제68조의27(구동축전지 대여자 사업요건 등) ① 대여 구동축전지를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대여하려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u>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일 것</u>

현행	개정안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동축전지 대여 관련 전담인력 및 시설(대여 구동축전지의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 ②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시정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지체없이 구동축전

현행	개정안
	<u>지대여이용자의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구동축전지를 대여할 때에는 구동축전지대여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가. 검토의견

구동축전지 대여는 하나의 자동차에 소유자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자동차 판매보다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안 제68조의26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이용자 편의 증진 등 목적 부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계획 시정명령은 불이행 시 사업계획 취소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어짐에도, 안 제68조의26제4항제2호는 시정명령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

됨.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68조의26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취소 및 제68조의27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미비하고, 이미 체결된 구동축전지 대여계약 및 기존에 등록·운행 중인 자동차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68조의27에서 대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서 구동축전지 대여 관련 전담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전문 사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를 규율할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적 수단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벌칙 등규정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여자가 부담하는 등록 및 사업요건 충족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제72조(보고·검사) 및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를 대여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68조의26제1항제4호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경우 대여자 등과 연계한 관리 방식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안 제68조의27제1항은 대여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요건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동축전지 대여가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즉, 대여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차제작자등의 사업계획에 편입되어 그와의 전략적 협업 관계를 통해서만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파악됨.

시설대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인 등록 업종인데, 대여의 대상이 구동축전지라는 이유로 관리·감독 권한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68조의27제2항은 대여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를 성능시험 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대여업에 대한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사업계획 수립) 구동축전지 대여는 자동차 중 구동축전지 소유자가 달라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제작, 변경, 판매 등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안전관리,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사업계획 승인) 자동차제작자등이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이용자 편익 증진 등 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에 공감함. 아울러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함.

(승인 취소) 자동차제작자등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계획 이행 불가, 승인 취소 요청 등의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시 기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정보 제공) 소비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동축전지 교체 방법과 절차, 매매·폐차시 구동축전지 처리 방법, 교환·환불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정보제공 주체를 “자

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와, 이들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사업요건) 구동축전지 대여는 한 자동차에 소유자가 분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업요건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담인력·시설을 보유한 「여신전문금융법」상 시설대여업자를 대여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사업요건 시정·조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요건 준수 여부 조사가 가능할 필요 있음.

(제재 및 소비자보호)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 정지 명령 등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사업 중지 명령 시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있음. 아울러, 구동축전지 대여시 대여자는 이용자에게 약관, 기간 및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

7. 과징금, 벌칙, 과태료 및 부칙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u>제51조의4제1항</u> 또는 <u>제66조제1항</u>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u>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u>, <u>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u> 또는 <u>자동차관리사업자</u>에 대한 업무 또는 <u>사업정지처분</u>(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u>정지처분</u>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지처분</u>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 ----- ----- -----<u>제51조의4제1항</u>, <u>제66조제1항</u>, <u>제68조의26제5항</u> <u>또는 제68조의27제3항</u>----- ----- -----<u>이륜</u> <u>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u>, <u>자동차</u> <u>관리사업자</u>, <u>자동차제작자등</u> <u>또</u> <u>는 구동축전지 대여자</u>----- <u>사업정지처분</u>, <u>사업계획 승인</u> <u>취소 처분</u>(이하 “정지·취소처 <u>분”이라 한다</u>)----- -----<u>정지·취소처분</u>----- -----<u>정지</u> <u>· 취소처분</u>----- ----- -----

현행	개정안
행자의 <u>정지처분</u>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7. (생략)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설></u>	----- <u>정지처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제작자등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사업 정지 처분</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 -----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u>제68조의26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u> 8. <u>제69조의27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u>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8조의2(벌칙) ----- ----- ----- -----. 1.·2. (현행과 같음) 3.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2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 19.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 4의3. (생략) <u><신 설></u>	<u>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자</u> 4. 제6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관련 업무를 한 자 제79조(벌칙) ----- ----- ----- -----. 1. 제5조제1항----- ----- 1의2. ~ 19.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의2.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6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자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현행	개정안
<u><신 설></u> 5.·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2. (생략) 3. ~ 11. (생략) ④ ~ ⑥ (생략)	4의5. 제68조의27제4항을 위반하여 <u>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u> 5.·6.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

현행	개정안
	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4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조와”를 “제5조제1항과”로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6제1항제4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가. 검토의견

1) 과징금

개정안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자동차제작자등) 및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 정지(대여자) 처분은 이용자가 이용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정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¹⁴⁾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74조제1항의 과징금은 정액 상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과대상이 대규모 매출을 갖는 자동차제작자등임을 고려하면 위반 억지력으로 작용하기에 과소할 수 있음. 이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¹⁵⁾하여 관련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14)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5)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문

자동차제작자등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여자에 대한 사업 정지 명령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벌칙

개정안에서 제78조의2제3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자) 및 제4호(사업계획 승인 또는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관련 업무를 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¹⁶⁾에 대한 처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8조의2제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러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한 자에서 관련 업무는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부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68조의2제6항과 안 제68조의2제3항은 각각 자동차제작사와 대여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과태료

개정안 제84조제2항제4호의4(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16)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대여자 또는 대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및 제84조제2항제4호의5(대여 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동축전지 정보 미제공·거짓 제공(제84조제2항제1호의3¹⁷⁾) 및 반품 자동차 사실 미고지 판매(제84조제2항1호의2¹⁸⁾)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84조제3항제1호(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84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¹⁹⁾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17)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8)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9)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수준으로 보임.

다만, 안 제13조의2제1항은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변경등록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변경등록 신청일, 신청 사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부칙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일과 관련하여 법률 제21412호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시행일을 법률 제21412호의 시행일(2027년 7월 1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구동축전지 자동차 대여사업과 관련한 실증특례가 진행중이므로 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킬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과징금) 대여 사업 정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방지 등을 위해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 정지(대여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자동차제작자 등)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필요 있음. 아울러, 정지·취소시 기존 계약 연장 곤란 등 이용자의 자동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청문) 자동차의 판매중지,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를 고려하여,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 관련 정지·취소 처분도 청문을 거칠 필요 있음.

(벌칙)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받지 않고 검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거짓·부정 승인, 미승인 상태에서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을 한 경우도 동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과태료) 유사 입법례²⁰⁾에 따라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시 1천만원 이하, 등록된 구동축전지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20) (1천만원 이하)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 관련 정보를 거짓 또는 미제공
(300만원 이하)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